<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85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년 8월 22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6년 1월 28일

『두찜』

정 보 공 개 서

[㈜기영에프앤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기영에프앤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800-819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576-1160 (7층) / 02-577-1160 (8층) / 02-578-1160 (9층)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팀, 주소 및 전화번호 상동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두찜]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기영에프앤비		사용 브랜드	두찜 외 23개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8.11.	2017.8.21.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법인등록번호	170111-0651902	사업자등록번호	699-87-0067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강 인 규/ ㈜기영에프앤비	두찜 외 23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이 기 영/ ㈜기영에프앤비	두찜 외 23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안 재 규/ ㈜기영에프앤비	두찜 외 23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배 주 현/ ㈜기영에프앤비	두찜 외 23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이 영 운/ ㈜기영에프앤비	두찜 외 23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 사	여 지 숙/ ㈜기영에프앤비	두찜 외 23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도곡동, 기영빌딩)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 인 규	1800-8192	02-576~8-116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두찜』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두찜	두 마리 찜닭 전문점
상 호	두찜 ○○점	
서비스표	두찜	등록번호 : 제4013410080000호
	TWOZZIM	등록번호 : 제4016328590000호
	두찜	등록번호 : 제4103656250000호
	두찜	등록번호 : 제4014382510000호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0,731,135	10,376,491	10,354,644	92,766,561	3,232,937	3,423,535
2023년	29,130,589	13,948,770	15,181,818	107,584,937	6,192,542	4,827,173
2024년	34,384,690	15,033,542	19,351,148	121,775,600	3,966,320	4,169,329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강 인 규	대표이사	2020. 8. ~ 2024. 3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대표이사	업무총괄
	이 기 영	사내이사	2017. 8. ~ 2024. 3	**[㈜기영에프앤비]** 대표이사	업무총괄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경영지원
	안 재 규	사내이사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경영지원
	배 주 현	사내이사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가맹운영
	이 영 운	사내이사	2024. 3. ~ 현재	**[㈜기영에프앤비]** 사내이사	창업전략
	여 지 숙	감 사	2022. 11 ~ 현재	**[㈜기영에프앤비]** 감 사	내부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5	0	10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19.09.~현재	**백참**(등록번호 : 2019095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0.11.~현재	**떡볶이 참 잘하는집, 떡참**(등록번호 : 20201348)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2.05.~현재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등록번호 : 20213267)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숯불치킨)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커피다운(coffee down)**(등록번호 : 20213266)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사이공**(등록번호 : 20213274)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국식(베트남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누들**(등록번호 : 20213273)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국수)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닭갈비**(등록번호 : 20213272)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닭갈비)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비어**(등록번호 : 20213271)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곱창**(등록번호 : 2021327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키트**(등록번호 : 20213275)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밀키트)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찌개**(등록번호 : 20213280)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족발**(등록번호 : 2021328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카츠**(등록번호 : 20213284)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돈까스, 우동, 메밀)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피자**(등록번호 : 20213282)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라이스**(등록번호 : 20213269)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덮밥, 비빔밥)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브레드**(등록번호 : 20213268)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 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도시락**(등록번호 : 20213276)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미트**(등록번호 : 20213277)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고기류)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반점**(등록번호 : 20213279)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버거**(등록번호 : 20213278)라는 영업표지의 패스트푸드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김밥**(등록번호 : 20213285)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데일리치킨**(등록번호 : 20213281)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요거티**(등록번호 : 20241443)이라는 영업표지의 음료(커피외)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등록신청인	등록만료일	이미지
상 표	출원 : 2017.4.21.	출원 : 제4020170051344호	㈜기영에프앤비	2028.3.15.	두찜
	등록 : 2018.3.15.	등록 : 제4013410080000호			
	출원 : 2019.4.23.	출원 : 제4020190063477호		2030.8.11.	TWOZZIM
	등록 : 2020.8.11.	등록 : 제4016328590000호			
	출원 : 2015.11.27.	출원 : 제4120150057119호		2026.7.13.	
	등록 : 2016.7.13.	등록 : 제4103656250000호			
	출원 : 2018.3.28.	출원 : 제4020180040802호		2029.1.18.	
	등록 : 2019.1.18.	등록 : 제4014382510000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두찜』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6년 7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6년 2월 3일)

2.『두찜』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영에프앤비(F&B)	두찜	이기영	2016.01.~2017.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9길 95-9, 지상1층(본동)
㈜기영에프앤비	두찜	이기영	2017.08.~2018.0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21길 29
㈜기영에프앤비	두찜	이기영	2018.05.~202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 (도곡동, 기영빌딩)
㈜기영에프앤비	두찜	강인규	2024.03.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2 (도곡동, 기영빌딩)

3.『두찜』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두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찜닭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두찜』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88	588	-	592	592	-	603	603	-
서울	89	89	-	89	89	-	93	93	-
부산	35	35	-	34	34	-	35	35	-
대구	29	29	-	29	29	-	29	29	-
인천	33	33	-	34	34	-	38	38	-
광주	19	19	-	20	20	-	19	19	-
대전	17	17	-	19	19	-	18	18	-
울산	10	10	-	11	11	-	13	13	-
세종	4	4	-	4	4	-	4	4	-
경기	146	146	-	147	147	-	146	146	-
강원	20	20	-	21	21	-	18	18	-
충북	20	20	-	19	19	-	21	21	-
충남	31	31	-	32	32	-	32	32	-
전북	21	21	-	20	20	-	19	19	-
전남	30	30	-	31	31	-	28	28	-
경북	38	38	-	34	34	-	36	36	-
경남	36	36	-	38	38	-	43	43	-
제주	10	10	-	10	10	-	11	11	-

5. 최근 3년간『두찜』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2년	571		30	12	119	588
2023년	588	56	4	48	25	592

2024년	592	48	4	33	79	603

6.『두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두찜**』외에도 가맹본부가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단위 : 개)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떡볶이 참 잘하는집, 떡참	**20201348**	분식	323/1	119/0	82/0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20213267**	치킨 (숯불치킨)	70/1	175/0	248/0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백참	**20190957**	한식 (백숙)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커피다운 (Coffee Down)	**20213266**	커피	0/1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사이공	**20213274**	기타외국식 (베트남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누들	**20213273**	기타외식 (국수)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닭갈비	**20213272**	한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비어	**20213271**	주점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곱창	**20213270**	한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키트	**20213275**	기타외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찌개	**20213280**	한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족발	**20213283**	한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카츠	**20213284**	일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피자	**20213282**	피자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라이스	**20213269**	한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브레드	**20213268**	제과제빵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도시락	**20213276**	한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미트	**20213277**	한식 (고기류)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반점	**20213279**	중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버거	**20213278**	패스트푸드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김밥	**20213285**	분식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데일리치킨	**20213281**	치킨	-	-	-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요거티	**20241443**	음료 (커피외)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603	418,980	30,254	1,927,851	181,497	27,240	1,231	
서울	93	597,939	43,712	1,927,851	181,497	134,083	7,150	
부산	35	359,105	25,167	603,583	49,166	211,538	11,746	
대구	29	404,168	25,644	886,442	88,671	133,939	5,766	
인천	38	461,570	28,142	1,647,882	60,793	149,506	8,837	
광주	19	418,183	23,274	1,142,816	66,106	27,240	2,568	
대전	18	475,223	29,854	1,084,142	81,252	133,742	9,130	
울산	13	313,314	18,024	583,911	51,338	144,381	8,484	
세종	4							5개 미만
경기	146	421,963	27,441	1,442,537	142,997	113,163	5,057	
강원	18	347,664	18,688	1,001,788	61,466	141,468	7,460	
충북	21	337,961	17,890	799,736	34,535	128,074	5,190	
충남	32	384,783	20,995	925,071	86,438	85,573	4,433	
전북	19	432,382	20,644	735,835	70,568	97,888	5,735	
전남	28	273,513	12,587	576,801	31,320	34,025	1,231	
경북	36	344,700	19,291	734,536	57,370	86,570	5,086	
경남	43	316,741	16,690	663,405	54,884	105,206	2,449	
제주	11	332,519	16,568	732,805	31,044	104,758	7,405	

상기 매출액은 POS에서 확인한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28개점은 2024년 영업개월 수가 6개월이 되지 않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샵인샵

매장인 4개점은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603개 가맹점이 아닌 571개 가맹점의 연간평균 매출액 추정자료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산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두찜』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603	1,50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두찜**』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4년에『**두찜**』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판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	-	15,692,172	(비공개)	(비공개)	-
광 고	소 계	-	4,813,098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 촉	소 계	-	10,879,073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당사는『**두찜**』,『**떡볶이 참 잘하는 집, 떡참**』,『**기영이 숯불 두마리 치킨**』등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비용은 가맹본부가 별도로 부담한 비용 외『**두찜**』의 가맹점과 분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기재한 것으로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기영에프앤비**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예치금 범위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기영에프앤비	의결2022-140 (2021가조1390)	가맹사업법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제7조 제2항)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조 제1항)	2022.06.03.	시정명령, 과징금 7,500만원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두찜**』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및 권리금,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 실시)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보증보험 실시)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내역	금 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	가맹점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	반환 안됨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교육비	[2,200]	가맹점운영에 관한 교육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 계	**[7,700]**				

▸교육비는 2명 기준이며, 2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금 일백일십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 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당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	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 초 가 맹 금	[7,700]	포함
계 약 이 행 보 증 금	[3,000]	없음
합 계	**[10,700]**	**-**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점포 규모별로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 49.5 m^2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합 계		**[26,211]**	**[1,747]**	**-**		**-**
인테리어	자율선택	[12,500]	[833]	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
간판		[2,500]	-			-
의·탁자		[1,111]	-			-
주방설비	당사 또는 자율선택(품목에 따라 다름. 별첨참조)	[5,500]	[366]			**[별첨 3]** 참조
주방홀기물류		[1,100]	-			**[별첨 3]** 참조
메뉴판/유니폼/배너		[200]	-	물품공급 3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비		[3,300]	-	물품공급 3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별첨 2]** 참조
POS	자율선택	구매 또는 대여		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3.3 m^2 당 [220]을 기획관리비로 청구할 수 있음						

귀하의 공사 진행은 당사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귀하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의 직원이 파견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전기승압, 외부공사, 가스공사, 냉·난방 설비,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과 당사의 공사 세부기준은 계약체결과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승인기준 (종합적 검토) - 기존 가맹점과의 상권중복여부 - 점포의 전용면적 - 가시성 및 접근성(점포가 지상1층이 아닌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인 경우 가맹본부의 별도 기준에 의한 승인이 필요) - 주변 상권 및 식음료업 분포 - 물류가능성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피고용인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만 20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두찜**』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차액가맹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광고비 제외

구분	금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보수 교육비	1인당 1일 [110] (십일만원)	당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광고비	한 마리 소스 개당 250원 반 마리 소스 개당 150원		선수취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비	실제 소요되는 판촉비용 중 귀하 부담분	당사 또는 제휴업체	행사별로 분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당사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환경개선 공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매월 금 [220] (이십이만원)		익월 10일 이내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	필요시 협의	당사 또는	필요시 협의	업체 기준에	부득이한 경우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해당업체		따름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내용에 따라 협의		내용에 따라 협의	업체 기준에 따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POS 프로그램 사용료	매월 금 [22] (이만이천원)	**협력업체**	당월 25일 지급	사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멸성 비용
PG/VAN	업체와 계약에 따라 다름	자율 선정업체	업체와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연 5%	당사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품 대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체 수수료의 50% (해당 수수료는 현재 진행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력업체**	해당비용만큼 차감 후 입금	업체 기준에 따름	상품권이 사용된 후 반환되지 않음

※ 모바일 상품권 매체 증가 / 축소에 따라 지급대상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상기 차액가맹금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 택배비 및 운송비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차액가맹금은 상기 금액보다 적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설비관리	가맹점의 각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필요 시	문의 : 1800-8192
위생 청소상태 관리	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		
회계처리	매출자료에 대한 회계 조사 및 점검		
재고관리	실재 재고 수량과 장부상 재고 비교		
제품 퀄리티 관리	제품 퀄리티 상태 점검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갱신비	[1,1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안됨	소멸성 비용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두찜**』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해당 양수도가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가맹사업의 양도일 전일까지 가맹금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의 서비스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두찜**』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두찜**』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 초 가 맹 금	[7,700]	포함
계 약 이 행 보 증 금	[3,000]	없음
합 계	**[10,700]**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당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였음에도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잔존 채무액에 대한 정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채무 전

액을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해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두찜**』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철거의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의 상호・간판・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지연손해금으로서 지체 1일 당 금 십만원(₩1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두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두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위 경제적 이익의 내용은 일부 추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0.5% 범위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두찜**』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두찜**』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서비스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첨 5] 참조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 5] 참조		POS를 통한 게시	2025년 4월 기준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해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찜닭 전문점	두찜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기준 반경 500m 로 설정함.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특수상권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지하상가 등)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등) 위락시설(카지노, 워터파크, 놀이동산 등) 운수시설(철도·항만·공항시설, 버스터미널 등) 대형체육시설(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 문화집회시설(영화관, 경마장, 동물원, 한강공원 등) 기타(군부대, 대학교, 종합병원, 관공서, 휴게소, 사내식당 등)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외부와 단절되어 특정한 공간·시설·지역에 기대 형성되는 상권) 내로 한정함

▸개별약정이 있을 경우 개별약정을 우선합니다.
▸일반상권의 영업지역 안에 특수상권이 있을 경우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특수상권에 입점한 경우 배달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중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두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브랜드의 홍보 및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시장에서 더욱 비중을 높여가는 온라인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오프라인의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두찜**』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1년**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전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로 인한 가맹본부의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내용(관련 계약조문 : 제32조 제1항)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33조 제1항)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10%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1조)을 위반한 경우
○ 영업시간 규정(제26조)을 위반한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POS등의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본부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단독광고 및/또는 단독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 샵인샵 형태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33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합의해지 시 위약금 산정은 가맹계약서 제33조 및 제38조에 의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상호 협의하여 정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1800-8192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

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대리행사	불가	-	-	-
업무위탁	불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두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찜닭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1800-819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두찜**』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휴업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하루 12시간 이상	월 26일 이상 영업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금지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기	비 고
점포의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비스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체크 → 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친절도 검사	담당자 가맹점 방문→접객 매뉴얼 준수 여부점검→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두찜**』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단위 광고 또는 판촉

구 분	성 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체 행사	제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각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기준은 아래 표 참고)	광고 계획 공고 → 사전동의 → 광고비 분담 지출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제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70%	**광고비 30%** (각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기준은 아래 표 참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사전동의 →판촉비 분담 지출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행사	기획비용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을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제휴서비스 소셜커머스 등			균분하여 부담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순번	분담액 분담 기준	비용	납부방법
1	한 마리 소스 1EA	250	소스 출고 시 소스 가격에 합산하여 청구함
2	반 마리 소스 1EA	150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영업상 중요정보(가맹계약서, 경영노하우, 영업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공지사항, 거래처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예치대상 가맹비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예치대상 가맹비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예치대상 가맹비의 60%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 일수당 3만원씩 최대 180일 한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상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1일당 1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직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써 가맹본부 및 타 가맹점의 급격한 매출하락이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5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보증보험 안내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일	
교육실시	-상품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4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상기 방법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거나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협의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1800-819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경영지도 요청 후 상호 합의된 장소(가맹본부 혹은 가맹점)에서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문의 : 1800-8192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두찜**』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두찜**』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개점 전)	상품 제조방법 및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교육	출·퇴근 집체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신상품 교육 (개점 후)	상품 제조방법	출·퇴근 집체교육 또는 S/V를 통한 개별교육(현장방문 또는 온라인교육)	필요 시	
보수교육	상품 제조방법 및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교육	출·퇴근 집체교육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두찜**』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개점 전)	4일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숙식비, 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원부재료의 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함
신상품 교육 (개점 후)	개별 산정	실비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	개별 산정	실비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 산정	실비	개점 전 교육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산정	교육생 1인당 [110]	매출 또는 QSC 부족, 고객클레임이 다수 발생한 경우

		(십일만원)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귀하를 포함한 1인 이외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생 1인당 금 일백일십만원(부가세포함)의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숙박비, 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연기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1800-81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설비, 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까만 / 빨간찜닭 반마리 (뼈)	19,800	공기밥	1,500원
까만 / 빨간찜닭 1마리 (뼈)	26,800	납작만두 (5개)	2,000원
불닭로제찜닭(순살)	32,800	튀김오뎅 (5개)	2,000원
마라로제찜닭(순살)	32,800	긴말이튀김 (2개)	3,000원
묵은지 찜닭 (뼈)	28,800	감자만두 (5개)	2,500원
로제 찜닭 (뼈)	30,800	치즈볼 (3개 / 5개)	3,000 / 4,500원
닭볶음탕 (뼈)	30,800	치즈스틱 (2개)	2,000원
시래기찜닭 (뼈)	30,800	등심돈까스	3,000원
트러플크림찜닭	30,800	하트감자고로케 (3개)	3,000원
로제닭발	26,800	통새우튀김 (2개)	4,000원
묵은지찜닭	30,800	고구마 (3개)	2,000원
타코라구요찜닭	34,800	곰도리떡(10pcs) 추가	2,000원
트러플크림찜닭	30,800	미트볼(5pcs) 추가	1,500원
치즈몽땅찜닭	30,800	볼치즈(16pcs) 추가	2,500원
스팸부대찜닭	30,800	치즈비엔나(7pcs) 추가	3,000원
실비한우곱찜닭	34,800	옛날통닭(반마리)	6,500원
매운갈비찜닭	34,800	모치치(1개/2개)	2,500/4,500원
뼈 → 순살변경 시	2,000원	납작당면	3,000원
순살 반마리 추가	6,000원	둥근당면	2,500원

※ 메뉴가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6. 제공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영업표지**	두찜
제공확인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기영에프앤비 대표이사 강 인 규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	**영업표지**	두찜
제공확인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기영에프앤비 대표이사 강 인 규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